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19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윤준병 · 이학영 · 박희승
이언주 · 박용갑 · 이용우
이춘석 · 최혁진 · 송옥주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

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사교육소집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u> <u>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u> <u>지급한다.</u>